
환 경 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5-1번지
사업규모	생태탐방로 면적: 97,686㎡(보행길이 약 2.5km)		
사업목적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한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 편의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5,546	90,357	70,957	0	19,400	14,81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5,546	90,357	70,957		19,400	14,81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400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경비 · 수목 병충해방제 : 경정(7,200,000원)-기정(4,800,000원) = 2,400천원 · 조류관찰대 철거 :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 목재시설 보행데크 관리(물때 및 곰팡이 제거) : 14,000,000원 * 1식 = 14,000천원	= 19,400 = 2,400 = 3,000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22년 공모선정) 및 탄소숲 조성사업('22년 공모선정)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수목 확대(교목 380주, 관목 6,800주, 초본 42,000주 등)로 인한 수목관리(병충해방제) 비용 증액 필요
- 기 편성된 병충해방제 예산 내에서 1회 방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추가 예산 확보 시급.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년차(2025년)부터 2년간 유지관리 보고서 환경부 제출(지자체→환경부)
- 조류관찰대 목재 하부 부식 및 균열 등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비용 반영
- 곰팡이 및 물때로 인한 시민 미끄럼 사고 방지 및 목재 데크시설(보행목교 3개소, 관찰데크 3개소, 쉼터데크 3개소, 우회데크 2개소) 수명연장을 위한 전문업체 관리(고압세척, 곰팡이 제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유지관리 대상 수목 확대(교목 380주, 관목 6,800주, 초본 42,000주 등)로 병충해방제 비용 증액
-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류관찰대 철거 비용 반영(3,000천원)
- 목재 보행데크 곰팡이·이끼 등으로 미끄러움 발생. 특히 우천 시 시민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관리 비용 반영(11개소, 14,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1.08. :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준공
 - 2011.10. : 생태탐방로 위탁관리 운영 협약 체결(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
 - 2011.11. ~ 현재 : 하동천 생태탐방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대행관리 운영 중
 - 2025. 1. : 대행사업비 교부
 - 2025. 2. ~ 4. : 탐방로 잡목제거 및 갈대제거, 표지판 정비 등
 - 2025. 5. ~ 10. : 조류관찰대 철거, 병충해방제, 목재데크 정비 등 유지보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연간이용객 : 22,317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장검점검전기, 소화기 등, CCTV설치, 탐방로 안내판 설치 전동공구 구입 등
2024	- 연간이용객 : 28,025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장검점검전기, 소화기 등, 가로등 및 데크등 유지보수 등
2025	- 연간이용객 : 6,973명(2025. 4. 23.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장검점검전기, 소화기 등, 수목 유지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533	129,763	-	2,770	
2024	75,546	73,727	-	1,819	
2025	70,957	70,957	-	-	4.23.기준 집행현황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한국도로공사 공동참여

사업기간	2025. 10. ~ 2026. 3.	사업위치	한강하류권역(하성면~월곶면)
사업규모	298ha		
사업목적	겨울철새인 재두루미의 도래를 위하여 조성한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보전하여 매년 찾아 오는 재두루미의 개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3,000	23,000	0	0	2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000	23,000			23,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00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한국도로공사 참여	301-14 기타보상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금 55원/㎡ × 418,181㎡ = 23,000,000원	= 23,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인근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 사업 참여요청에 따라 공동 추진
-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를 비롯한 법종보호종 겨울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서 벼 수확 후 벼짚존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철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도와 한강 하류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확보 취서식 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7. ~ 09. :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2025.10. : 한국도로공사에 사업 공동 추진에 따른 사업비 납입 고지서 발급
- 2025.10. ~ 2026.03. :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
- 2025.12. :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자 계약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먹이(벌씨) 공급량 : 35톤 ○ 먹이(미꾸라지) 공급량 : 20
2024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벚짚존치) 보상금 지급 : 22,956,530원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000	22,914	-	86	
2024	23,000	22,957	-	43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환경7급 이종원	전화	2248
-----	-------	------------	-----	----------	----	------

철새 먹이주기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5. 8. ~ 2026. 6.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1121번지 일대
사업규모	120ha		
사업목적	겨울 철새 등 법정보호종의 취서식지를 조성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임규정	제3조 제3항(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20,500	0	0	20,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500			20,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500	
철새 먹이주기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먹이주기 임차 등 : 13회 × 192,350원 = 2,500,550원	2,500	
	206-01 재료비	· 법씨구입 등 : 1,800원/kg × 10,000kg = 18,000,000원	18,000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새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어 먹이주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철새 개체수 및 생물다양성 증가
- 기존에 후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재두루미) 등의 먹이주기 사업 추진으로 철새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철새 먹이주기 추진 사업으로 신규 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2025.11. : 철새 및 법정보호종 먹이(법씨) 구입
- 2025.11. ~ 2026.03. : 먹이주기 사업 진행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환경정책과	사업규모	약 120ha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0,500
부기명 (세부사업)	철새 먹이주기 사업 추진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1121번지 일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환경7급 이종원	전화	2248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후에너지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사업기간	2024. 10. ~ 2025. 9.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자원화센터 외 9개소(공공시설 폐기물부문)		
사업목적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안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제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임규정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0,000	70,000	30,000	4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0	70,000	30,000	4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207-01 (연구용역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 40,000,000원 - 인건비(연구원 + 보조원) = 31,308,300원 - 경비(여비+유인물비) = 1,708,000원 - 일반관리비 + 이윤 = 3,347,770원 - 부가세 10% = 3,636,407원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제3차 계획기간(21 ~ 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21.7.30.)됨에 따라 배출권거래 등의 의무 발생
-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대응하고자 이행연도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등을 포괄하는 용역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반영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2025.4 반영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5년도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착수
- 2025. 10. : '25년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제출
- 2026. 03. : '25년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
- 2026. 05. : '25년도 배출량 인증 및 할당량 확정 통보(환경부→시)
- 2026. 06.~08. : '25년도 배출권 부족분 구매
- 2026. 08. : '25년도 배출권 부족분 제출(환경부)
- 2026. 09.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2.10.06. ~ 2023.09.15.)
2024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3.10.05. ~ 2024.09.15.)
2025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4.10.10. ~ 2025.09.1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000	94,027	7,027	4,946	
2024	77,027	61,540	10,541	4,946	
2025	40,541	14,960	-	25,581	4.2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7급 오윤택	전화	5363
-----	--------	------------	-----	----------	----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등 3개마을
사업규모	자가용 : 248kW(73가구), 상업용 : 82.335kW(3개소)		
사업목적	자가용 : 248kW(73가구), 상업용 : 82.335kW(3개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7조 제1항 제5호
	해당조례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3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29,380	0	0	429,380	429,380	
국비	0	0			0	0	
도비	0	161,020			161,020	161,020	
시비	0	268,360			268,360	268,360	
기타	0	107,356			107,356	107,35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9,38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후평리 - 자가용 : [(1,644,000원 × 3kW × 33가구) + (1,463,000원 × 17.5kW × 2가구)] × 80% - 상업용 : 1,644,000원 × 50kW × 1개소 × 80%	= 236,928	- 태양광 단가 : 1kW당 1,644천원 - 지열단가 : 1kW당 1,463천원
		· 석정1리 - 자가용 : 1,644,000원 × 3kW × 21가구 × 80% - 상업용 : 1,644,000원 × 19kW × 1개소 × 80%	= 107,842	
		· 포내1리 - 자가용 : 1,644,000원 × 3kW × 17가구 × 80% - 상업용 : 1,644,000원 × 13.335kW × 1개소 × 80%	= 84,61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불평등 해소
- 개인주택에 태양광 자가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마을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마을 복지 구현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3312(2025.03.27.)호 2025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예산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6. : 컨소시엄 협약체결(김포시-마을회-시행사)
- 2025. 06. ~ 07. :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상업용)
- 2025. 08. ~ 11. : 사업실시(자가용 및 상업용) 및 보조금 집행
- 2025. 12 : 사업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하성면 후평리, 대곶면 석정1리, 월곶면 포내1리 ○ 사업비 : - ○ 사업량 : 자가용-73가구/248kW, 상업용-3개소/82.335kW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이철희	담당자	행정6급 이의혜	전화	5384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지도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사업장		
사업목적	화학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① 김포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김포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16,900	167,000	0	-50,100		
국비		0				0	
도비		0	50,100		-50,100	0	
시비		116,900	116,900			116,9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100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사업비 : 경정(시비 116,900)-기정(도비 50,100, 시비 116,900) =	-50,100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5년간('19~'23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상당원인은 시설 결함
- 사업장 대부분은 소규모 재정여건으로 스스로 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한계
-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비는 경기도에서 운영기관(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으로 직접 교부되므로 도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불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17. :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2025. 2. 19. : 위·수탁 협약서 체결[김포시↔(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2025. 2. 27. ~ 3. 17. :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5. 3. 19. : 사업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김포시→(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2025. 4 ~ 10. : 사업장 선정 및 사업추진
- 2025. 11 ~ 12. : 결과보고 및 최종결과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67,000	116,900	-	50,1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5655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 2025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1월~11월분), 2024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로 안정적 반입 처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4조, 제9조
	- 규정 제4조 :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제9조 :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57,115	4,723,680	4,457,118	0	266,562	466,56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57,115	4,723,680	4,457,118		266,562	466,56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6,562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반입총량제 초과 가산금 : 경정(1,159,767,000원)-기정(893,205,000원) =	266,562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초과 가산금」의 작년 대비 초과 지출에 따른 예산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생활폐기물총량 31,521.51톤으로 작년 예상(30,000톤)대비 105%수준으로 확정
- 「2024년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초과 가산금」 초과 납부에 따른 2025. 4. ~ 11.분 반입수수료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2025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및 반입수수료 납부
- 2025. 03. : 2024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2.12.~23.11.) : 28,254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2,742,875천원 - 2022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467,326천원
2024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3.12.~24.11.) : 30,987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3,582,476천원 - 2023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547,804천원
2025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4.12.~25.03.) : 10,248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1,201,182천원 - 2024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159,7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7,656	4,210,201	-	197,455	
2024	4,257,115	4,130,280	-	126,835	
2025	4,457,118	2,360,949	-	2,096,169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
사업규모	소각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등)		
사업목적	한강신도시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917,872	9,019,334	8,824,954	31,900	162,480	1,101,46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917,872	9,019,334	8,824,954	31,900	162,480	1,101,46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2,480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자원화센터 운영비 : 경정(7,195,950,000원)-기정(7,033,470,000원) = - 파쇄기 종합정비 : 경정(161,030,000원)-기정(98,550,000원) - 전기요금 : 경정(1,300,000,000원)-기정(1,200,000,000원)	162,480	

□ 예산요구 사유

- 반입된 폐기물을 파쇄하는 중점 관리 대상 설비로 예방 정비 필수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인상됨에 따라 월평균 전기요금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 ~ 12. : 소각장 종합정비 기간에 맞춰 정비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 24,022.96톤 · 음식물처리시설 : 7,442.30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1,026,164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 1,121,849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4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 19,491.71톤 · 음식물처리시설 : 7,019.06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916,820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 933,331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5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 5,689.47톤 · 음식물처리시설 : 1,704.30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261,020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 300,345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441,014	8,079,373		361,641	
2024	7,917,872	7,509,638		408,234	
2025	8,856,854	6,418,445		2,438,409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헌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772
-----	-------	------------	-----	----------	----	------

재활용수집소 운영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금포로 1119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사업규모	재활용수집소 투입구 및 야적장 소방시설 설치 / 전기요금 증액		
사업목적	재활용수집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재활용수집소 적정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증액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5호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300,529	2,628,185	2,456,316	0	171,869	327,65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00,529	2,628,185	2,456,316	0	171,869	327,6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1,869	
재활용수집소 운영	401-01 시설비	· 재활용수집소 투입구 물대포 소방시설 : 89,267,000원 · 재활용수집소 야적장 스프링클러 설치 : 54,690,000원 · 수도공사 및 물탱크 설치 : 22,935,000원	= 89,267 = 54,690 = 22,935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비(전기요금 포함) : 경정(1,003,931,000원)-기정(998,954,000원)	= 4,977	

□ 예산요구 사유

-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 재활용 선별시설의 지속적인 화재 발생 등 화재에 취약한 재활용시설의 특성상 소방설비를 강화하여 김포시의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활용수집소 전기요금 증액
 - 원활한 재활용수집소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필요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시설비(401-01)]
 - 2024. 8. 29. 일부개정 된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보관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투입구에는 발화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물대포 형식으로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설비면적이 큰 야적장에는 스프링클러 형식의 소방설비 설치
- 재활용수집소 전기요금 증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3)]
 - 2025년 2월 파봉인력 대기실 및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 20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9.7% 인상하는 등 전년사용량 대비 총 13% 증가 예상
 - 2025년 전기요금 기정액 82,682천원 → 경정액 87,659천원(예산 추가 필요분 약 6%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소방시설 설치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7.01. ~ 2025.07.14. : 계획보고 및 기본설계용역
 - 2025.07.15. ~ 2025.07.31. :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 2025.08.01. ~ 2025.08.31.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수집소 파봉공간 확보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 2023. 3. 21. ~ 5. 19.(60일) - 공사금액 : 314,933,200원 - 공사내역 : 파봉공간 확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전기공사 등 · 가설건축물 30x20m, 바닥공사 및 옹벽(구간:50m) 설치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 2024. 6. 21. ~ 9. 10.(82일) - 공사금액 : 377,430,000원 - 공사내역 : 강파이프조(가설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450㎡) 설치, 파봉공간 지붕 개선(360㎡) 등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64,338	1,966,016	-	98,322	
2024	2,300,529	2,192,179	-	108,350	
2025	2,456,316	1,596,167	-	860,149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자원순환과	사업규모	투입구 및 야적장 소방시설 설치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71,869
부기명 (세부사업)	재활용수집소 운영	사업위치	금포로 1119		

현장사진



선별동 투입구

현장사진



폐기물 및 재활용 야적장



페비닐 및 파지 야적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황윤희	전화	2776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해양하천과



생태하천개선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사업기간	2025. 3. ~ 2025. 8.	사업위치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26
사업규모	시민참여 하천정책 토론회 연 1회		
사업목적	정책발굴 및 소통실천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 제5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2,095	0	0	2,0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95			2,09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95	
생태하천개선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201-01 사무관리비	홍보 · 현수막 : 120,000원 * 1개 = 120,000원 · x 배너 : 50,000원 * 1개 = 50,000원 · 표 찰 : 30,000원 * 5개 = 150,000원 · 식순지 : 500원 * 200부 = 100,000원	= 420	
		토론 · 토론자 수당 : 230,000원 * 5명 * 1H = 1,150,000원 · 토론자 여비 : 25,000원 * 5명 = 125,000원 · 토론자 원고료 : 12,000원 * 5명 * 5P = 300,000원	= 1,575	
		다과 · 다과비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100	

□ 예산요구 사유

- 민선8기 공약사항 '전국 최고의 명품 수변길 조성' 추진 시민요구 반영
- 하천정책 개선과제 도출
- 하천정책 추진 시민 홍보
- 하천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체감 만족도 고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일자	2025.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년 민관참여 하천가꾸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해양하천과-1259호)
- 2025. 2. : 하천정책 이미지 시민인식 설문조사 실시계획 수립(해양하천과-2232호)
- 2025. 3. ~ 5. : 하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실시중)
- 2025. 6. ~ 8. : 시민토론회 준비(전문가 섭외*, 자료작성 등)

* 전문가 섭외 : GP미래지식포럼 추진예정

- 주제 : 수변중심의 도시재편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강사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권영상 교수

- 2025. 8. : 토론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한강, 굴포천
사업규모	국가하천 2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수초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10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제27조 제7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28,111	87,407	184,800	0	-97,393	-540,704	
국비	628,111	87,407	184,800		-97,393	-540,704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7,393	
국가하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전용회선비 : 경정(0) - 기정(79,800) =	-79,800	
	401-01 시설비	.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 경정(40,410) - 기정(40,000) = 410 - 굴포천 제방 4개소*10.1백만원 . 한강둔치, 굴포천 수초목 제거 : 경정(0) - 기정(65,000) = -65,000 .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 : 굴포천 제방 4개소*11.7백만원 = 46,997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교부(1차) 알림 [경기도 하천과-4297(2025.3.7.)]
- 2025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교부(2차) 알림 [경기도 하천과-4932(2025.3.17.)]

□ 예산증감 사유

- '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수요조사 배정액 조정에 따른 예산삭감 및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 비용 배정됨에 따라 예산 증감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06. : 사업발주 및 착공
- 2025.06. ~ 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한강둔치 산책로 나대지 수초목 제거 공사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4	-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 용역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0,000	115,308	65,585	9,107	
2024	693,696	150,049	532,389	11,258	
2025	717,189			717,189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L=6.24km,	2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97,393
부기명 (세부사업)	굴포천 제방 4개소 정기안전점검	사업위치	고촌은 전호리 ~ 신곡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김형철	담당자	공업8급 이상진	전화	5430
-----	-------	------------	-----	----------	----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사업기간	2025. 3.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지방하천 (5개소)
사업규모	수초목제거(4개소), 정밀안전점검(1개소)		
사업목적	- 수초목 제거 및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10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제27조 제7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460,000	300,000	0	0	-160,000	
국비						
도비	460,000	300,000			-160,000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	· 봉성포천 배수통문 7개소 정밀안전점검 : 7개소 × 10,000천원 · 수초목제거(도심하천 및 거물대천) : 319,000㎡ × 730원/㎡	= 70,000 = 23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비(100%) 보조사업으로 20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 성립전예산편성 [예산법무과-2900(2025.2.20.)]

□ 예산증감 사유

- 하천변 수목 및 수초 제거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20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03. ~ 09. : 사업발주 및 착공 (사업별 발주 및 착공시기 상이)
- 2025.07. ~ 12. : 사업준공 (사업별 준공시기 상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제거공사 - 봉성포천 제방도로 및 도수로 보강공사 - 개화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봉성포천 배수통문 14개소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물대천 하류부 제방 복구공사 - 봉성포천 호안 보수공사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제거공사 - 대표천 수초목제거공사 - 양택천 제방 보수공사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000	474,093	-	5,907	
2024	460,000	455,410	-	4,590	
2025	300,000	-	-	30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 수초목제거(4개소), 배수통문 정밀안전점검	2회추경 요구액 (천원)	3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사업위치	관내 지방하천 5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김형철	담당자	시설7급 김예지	전화	5428
-----	-------	------------	-----	----------	----	------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성립전)

사업기간	2025. 3. ~ 7.	사업위치	봉성포천, 포내천
사업규모	관내 지방하천 2개소, 퇴적토사 준설		
사업목적	- 퇴적토사 준설 실시로 유수의 흐름을 개선하여 사전재해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10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제27조 제7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10,000	100,000	0	0	100,000	-310,000	
국비		0				0	
도비	410,000	100,000			100,000	-31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401-01 시설비	. 준설 : 준설량 6,700m³ × 15,000원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비(100%) 보조사업으로 20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 성립전예산편성 [예산법무과-2900(2025.2.20.)]

□ 예산증감 사유

-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흐름 개선을 통하여 사전재해 예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2025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03. ~ 04. : 사업발주 및 착공 (사업별 발주 및 착공시기 상이)
- 2025.06. ~ 07. : 사업준공 (사업별 준공시기 상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봉성포천 풍수해예방 소규모준설공사 - 포내천 풍수해예방 소규모준설공사
2024	- 거물대천 소규모 준설공사 - 봉성포천 소규모 준설공사 - 양택천 소규모 준설공사 - 서암천 소규모 준설공사 - 국사천 소규모 준설공사 - 포내천 풍수해예방 소규모준설공사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00	103,575	-	6,425	
2024	410,000	406,421	-	3,579	
2025	100,000	-	-	10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준설2개소 : 6,700m ³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준설	사업위치	관내 지방하천 2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김형철	담당자	시설7급 김예지	전화	5428
-----	-------	------------	-----	----------	----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성립전)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리 551-1
사업규모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3층)		
사업목적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근로복지·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어업활동 적응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000,000	0	0	1,000,000	1,000,000	
국비		0				0	
도비		300,000			300,000	300,000	
시비		700,000			700,000	7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401-01 시설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50,000,000원*1개소 · 쉼터 건립 공사비 : 938,240,000원*1개소	= 50,000 = 938,240	
	401-02 감리비	· 쉼터 건립 감리비 : 11,760,000원*1개소	= 11,760	

□ 예산요구 사유

-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 급격한 어가 인구 감소로 어업경쟁력 약화 초래
- 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어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어업활동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복지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어업 이주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일자	2025.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신청(김포시→경기도)
- 2024.07. : 외국인 어업종사자 비울 감안에 따라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사업 수용
- 2025.04.~2025.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 2025.07. : 공사착공
- 2025.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F)	비고
			계(B=C+D+E)	본예산(C)	1회추경(D)	2회추경(E)		
계	1,000,000	0	0	0	0	1,0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50,000	50,000			50,000		
	보상비	0	0					
	공사비	938,240		938,240		938,240		
	감리비	11,760		11,760		11,76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300,000	-	-	30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이주노동자 쉼터(3층)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리 551-1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박문우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사업기간	2025. 5. ~ 2025. 8.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 L=105m(울타리 70경간) 실시설계		
사업목적	김포시-인천광역시 서구 간 계양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하부 산책로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 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20,000	0	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용역 : 20,000천원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구간의 사업주체 미확정과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 공사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23년 2회 추경 예산 반납 처리
-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의 준공(5월)과 202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측에서 산책로 연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으로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일자	2025.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0 : 주민참여예산 채택
- 2023.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주체 미확정, 계양천 수질개선시설 공사
- 2023.12 : 2023년 2회 추경 전액감액
- 2025.05 : 월당교 하부 산책로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5.09. : 공사 착공
- 2025.12.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L=105m, B=2m) 실시설계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 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570-3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인천시 방향(원경)



인천시 방향(근경)



김포시 방향(원경)



김포시 방향(근경)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우용	전화	5415
-----	-------	------------	-----	----------	----	------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성립전)

사업기간	2025. 5. ~ 2025. 10.	사업위치	고양배수문 외 4개소
사업규모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5개소		
사업목적	지방하천 배수문의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 ■보조(100%)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제2조,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746,000	0	0	746,000	
국비		0			0	
도비		746,000			746,000	도비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46,000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 템 구축	401-01 시설비	· 노후 배수문 시설 교체 × 5개소 = 270,000천원 · 전기공사 × 5개소 = 50,000천원 · 원격 감시제어 설비 구축 × 5개소 = 426,000천원	= 746,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교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경기도 하천과-7261(2025. 4. 1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일자	2025.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설계 및 사업발주
- 2025. 6. ~ 9 : 사업 착수
- 2025. 10.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8급 위인복	전화	5446
-----	-------	------------	-----	----------	----	------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한강, 계양천, 나진포천
사업규모	하천 출입차단시설 21개소 설치 (한강 3개소, 계양천16개소, 나진포천 2개소)		
사업목적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하천변에 접근을 통제하여 시민 안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836,000	420,000	748,000	0	-328,000	
국비		0			0	
도비	418,000	210,000	374,000		-164,000	
시비	418,000	210,000	374,000		-16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8,000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 차단시설 설치 : 경정(420,000천원)-기정(748,000천원) - 설치비 : 5,000천원*21개소 = 105,000천원 - 구입비(cctv, 전광판 등) : 15,000천원*21개소 =315,000천원	= -328,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상이변으로 호우특보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하천 하천산책로 등 이용률이 많은 하천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필요
- '25년 하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도비지원 교부결정 통지 [경기도 자연재난과-4440(2025.2.17.)]

□ 예산증감 사유

- '24년도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예산으로 통합구축시스템 사업 추진 중으로 별도 서버증설 비용 불필요
- 차단시설 설치 개소수(당초 15개소→변경 21개소) 변경하여 보다 많은 하천변 산책로의 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통제 실시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보안성검토 및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
- 2025. 05. : 사업착수
- 2025. 08. : 사업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통합구축소프트웨어 및 자동차단시설 26개소 설치(실시중)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36,000	-	836,000	-	
2025	1,584,000	-	-	1,584,000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L=2km, B=12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328,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위치	한강, 계양천, 나진포천		
위치도	계양천	한강		나진포천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김형철	담당자	공업9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